

의안번호	제491호
의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0년 4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1
------------	-----

제출연월일 : 2010년 4월 6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법령상호간에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제10조 삭제)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같은 항 제1호 “도 본청의 5급이상”을 “도 및 시·군 5급 이상”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단체”를 “단체의 임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임기로”을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를 “긴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 (1건당)
1.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1의2호의 심의 사항	위원 수×(안건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2.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의 4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회의출석수당+여비)
3.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제1의 5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안건심사수당×응찰업체수) + 위원 수 × (여비+회의출석수당) × 회의참석횟수
4. 그 밖의 심의사항	위원 수×(안건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 비 고**

1. 안건심사수당, 회의출석수당 및 여비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2.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를 말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제2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자</u>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와 같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u>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와 같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u>도 본청의 5급 이상</u> 공무원	1. 건설업무와 관련된 <u>도 및 시 군 5급 이상</u> 공무원
2. 건설관계 <u>단체</u>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 건설관계 <u>단체의 임원</u>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u>자</u>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u>사람</u>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u>자</u>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u>사람</u>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u>자</u>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u>사람</u>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u>자와</u>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u>자</u>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u>사람과</u>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u>사람</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기간</u> 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u> 한다.

현 행	개 정 안
<u>제5조 (생 략)</u> <u>제6조(회의)</u>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u>긴급을 요한다고 인정</u> <u>한</u>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u>제5조 (현행과 같음)</u> <u>제6조(회의)</u>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u>긴급하게 조치하여야</u> <u>한</u>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제7조 (생 략)</u> <u>제8조 (생 략)</u> <u>제9조 (생 략)</u> <u>제10조(위원회의 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 5조의 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u>제7조 (현행과 같음)</u> <u>제8조 (현행과 같음)</u> <u>제9조 (현행과 같음)</u> <u>제10조 <삭 제></u>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 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부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 행	개 정 안
<u>특별히 요청하는 공사</u>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제 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 항·제8조 제4항 및 제 102조제 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생 략)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생 략)	제11조의2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 (생 략)	제13조의2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생 략)	제15조의2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신 설>	부칙(2010. 2. 조례 제000호)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관련법령 발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